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55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2. 11.(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2.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2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전자수입증지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을 폐지하여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나.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수수료 등 납부에 관한 사항(제3조)
-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제4조)
- 계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제5조)
- 계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6조)
-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제7조)
- 수입금 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족지원과-49789(2024.10.24.)]
- 2) 규 제 심 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기획예산실-12358(2024.10.24.)]
- 3) 입 법 예 고 : 2024. 10. 30. ~ 11. 19(20일간)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 납부) ①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가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과 같다.

제5조(계기의 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의 고유번호

제6조(계기관리) ①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계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①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④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별표1] 고무인 (제3조 관련)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원를 납부한 증명입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4.0 cm²

8.0 cm²

[별표2]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4조 관련)

규격	도안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 ← 발행기관명
- ← 증지요금
- ← 발행연월일
- ← 고유번호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요금 계기 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인 증 기 표시금액		결 손 사 항				실 불 입 액		결 재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담당자	팀장	과·읍· 면장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 붙임: 수입증지 정산내역

일 일 전 표	결손내역 및 불입영수증

관련법령 발췌

◆ 「지방회계법」 제20조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재무과 통합징수팀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2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업분야교류 협정 체결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 베트남 꽝남성, 베트남 박칸성, 베트남 타이빈성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조건
-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국가(지자체)간 협력 방안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3. 추진실적

연도	도입 지자체	도입인원	이탈자	이탈률	비고
2023	필리핀 아팔릿시	261명	3명	1.1%	
	필리핀 마갈랑시	270명	37명	13.6%	
2024 상반기	필리핀 아팔릿시	371명	6명	1.6%	
	필리핀 마갈랑시	235명	72명	30.6%	
	필리핀 로렐시	97명	16명	16.4%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32명	2명	6.3%	
	라오스 산야부리주	102명	-	-	
2024 하반기	필리핀 아팔릿시	19명	-	-	
	필리핀 로렐시	24명	2명	8.3%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1명	-	-	
	라오스 산야부리주	51명	-	-	

4. 기타사항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협의 결과 및 경미한 변경 사항(최저임금, 유치 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후 시행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및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나. 참고자료

- 1) 비용추계서
- 2) '25년 체결 협정서(안)
- 3)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참고 1]

관련법령 발췌

<p>■ 지방자치법</p> <p>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p> <p>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p> <p>제2조(의결사항)</p> <p>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p> <p>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p>
--

[참고 2]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일반보전금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예상) 인원수 등
-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 인건비	82,063	82,063	82,063	82,063	82,063	410,315
	○ 일반운영비	330,200	363,220	399,542	439,496	483,446	2,015,904
	○ 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일반보전금	78,400	86,240	94,864	104,350	114,785	478,639
	○ 홍보비	2,970	2,970	2,970	2,970	2,970	14,850
	소계(b)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 총 비용(a-b)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군비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523,633	564,493	609,439	658,879	713,264	3,069,708

5. 부대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예상)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비용 산정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22년 123명 → '23년 558명 → '24년 1,066명 → '25년 1,800명(예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

6. 작성자

- 농정과 농촌인력팀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5년)

(단위 : 천원)

항 목	세 부 내 용	산 출 내 역	예산액
합 계			523,633
인건비	소 계		82,063
	행정업무보조 인건비	2,208.9천원 × 1명 × 9개월	19,880
	언어소통도우미 인건비	2,220.8천원 × 4명 × 7개월	62,183
일반운영비	소 계		330,200
	버스 임차료	1,000,000원 × 50대 × 3회	150,000
	현수막 제작	70,000원 × 40부	2,800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5,000원 × 2,000부	10,000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40,000원 × 1,800명	72,000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30,000원 × 1,800명	54,000
	해외 현지 통역비	100,000원 × 50회	5,000
	계절근로자 편의물품 구입	5,000원 × 1,800명	9,000
	계절근로자 임시숙소 임차비	50,000원 × 20명 × 5일	5,000
	외빈초청 기념품 제작	100,000원 × 20명	2,000
	고용주교육 및 입국설명회	3,000,000원 × 2회	6,000
	계절근로자관리차량임차	1,000,000원 × 12개월	12,000
	계절근로자관리차량유류비	200,000원 × 12회	2,400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	1,000,000원 × 3명 × 10회
일반보전금	소 계		78,400
	민간인국외여비(통역사)	1,000,000원 × 5명 × 2회	10,000
	외빈 숙박비	150,000원 × 5명 × 3일 × 4회	9,000
	외빈 식비	50,000원 × 5명 × 3식 × 4일 × 4회	12,000
	계절근로자 급식 제공	9,000원 × 1,800명 × 2회	32,400
	계절근로자 상해치료비	1,000,000원 × 15명	15,000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소 계		2,970
	프로그램 홍보 신문광고개제	330,000원 × 9회	2,970

[참고 3] '25년 체결 협정서(안) - 별첨

[참고 4]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 베트남 팡남성



- 성 도 : 팜끼(Tan ky)
- 면 적 : 10,438km²
- 농림지역 : 1,119km²
- 인 구 : 2,026천명('24년 기준)
- 행정구역 : 2시, 1시사, 15현(군)
- 주요산업 : 농업
- 기 타 : '97년 다낭시에서 분리

□ 베트남 박간성



- 성 도 : 박간(Bac Kan)
- 면 적 : 4,859km²
- 농림지역 : 3,401km²
- 인 구 : 323천명('22년 기준)
- 행정구역 : 1시, 7현(군)
- 주요산업 : 농업

□ 베트남 타이빈성



- 성 도 : 타이빈(Thai Binh)
- 면 적 : 1,584km²
- 농림지역 : 1,267km²
- 인 구 : 1,878천명('22년 기준)
- 행정구역 : 1시, 7현(군)
- 주요산업 : 농업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꽝남성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꽝남성 (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아래에서는 "A시"이라 칭함)
2. 베트남 꽝남성 (아래에서는 "B시"라 칭함)

제3조. 합의

1. 양측은 본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2.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본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베트남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A국가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프로그램은 5개월 동안 A시의 농업 지역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제5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가.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 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 라.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 마.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 한다.
- 바.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 행정비용 등 기본비용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

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사.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 ②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 ③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경상북도 성주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 나.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 라.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마. A시는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바.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 사. 부속합의서의 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베트남 팡남성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A시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다.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라. A시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필리핀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여행자보험,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 마. A시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 바.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B시와의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 ① B시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20% 이상 이탈 시 B시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②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5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③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7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A시와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자. 계절근로자의 과실로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교육한다.

차.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카. A시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제6조. 이행조항

1. 본 업무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업무협약은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및 2025년 월 일 베트남 꽝남성에서 체결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꽝남성을 대표하여
꽝남성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붙임] 부속합의서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

1. 업무협약(MOU) 주체

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 주소:
- 주관부서:
- 연락처: , 팩스/이메일:

나. 베트남 꽝남성

- 주소:
- 주관부서:
- 연락처: , 팩스/이메일:

※ 외국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시 반드시 인력송출 특정 지자체를 명시

2. 선발 대상 및 기준

가. 선발 대상: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꽝남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나이: 만 25세 이상 ~ 만 40세 이하의 남, 여

다. 직업: 농업 종사자 (근로자별 농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라.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자(보증비용 없음)

마. 제외대상: 색맹,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

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자는 본국 출국 후부터 귀국할 때 까지의 해당 기간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베트남에서 기본교육(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비용, 범죄경력증명 비용,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비용 등 기본 송출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송출 인원 및 시기

가. 송출인원: 연간 약 000명(송출 근로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송출시기: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A시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

4.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비자)로 한다.

나. 임금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근로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된다.

- 근로자와 농장주가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경우에 농장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다. 근무시간, 휴게, 휴일

- 근무시간은 일 7~8시간으로 하되, 1일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최저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한다.

- 매월 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는 최저시급의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는 최저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고용주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한다.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이 갖추어야 한다.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해당 비용을 정산 후 출국한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마. 교통비

- 항공료는 근로자(또는 B시)가 자부담으로 왕복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정상 근로 후 출국하는 경우 A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산 확보 시 항공료 정액(일정 금액)을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 입·출국 시 국내 공항과 A시 이동은 A시에서 지원한다.

바. 보험

- 고용주는 근로자가 입국 후 근로개시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근로자는 대한민국 입국 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사망자의 신체, 유해, 개인재산 등 베트남으로 귀국절차 및 비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 A시, B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 사유 발생 시 A시는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용주가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차.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별도 신고 없이 5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고용주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A시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 해지 시 근무지를 변경한다.(단, 대한민국 출입국관서의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한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된 경우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계약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귀국 비용을 부담하고, A시와 B시의 법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을 고려한다.

카.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타. 근로계약서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5. 입국 및 출국

가.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A시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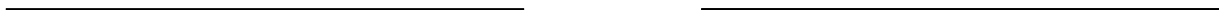
다.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될 수 있다.

* 귀책 사유 : 무단결근, 무단 이탈,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광남성을 대표하여
광남성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박간성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박간성 (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아래에서는 "A시"이라 칭함)
2. 베트남 박간성 (아래에서는 "B시"라 칭함)

제3조. 합의

1. 양측은 본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2.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본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베트남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A국가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프로그램은 5개월 동안 A시의 농업 지역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제5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가.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 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 라.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 마.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 한다.
- 바.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 행정비용 등 기본비용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

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사.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 ②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 ③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경상북도 성주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 나.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 라.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마. A시는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바.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 사. 부속합의서의 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베트남 박간성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A시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다.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라. A시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필리핀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여행자보험,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 마. A시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 바.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B시와의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 ① B시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20% 이상 이탈 시 B시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②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5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③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7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A시와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자. 계절근로자의 과실로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교육한다.

차.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카. A시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제6조. 이행조항

1. 본 업무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업무협약은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및 2025년 월 일 베트남 박간성에서 체결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박간성을 대표하여
박간성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붙임] 부속합의서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

1. 업무협약(MOU) 주체

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 주소:
- 주관부서:
- 연락처: , 팩스/이메일:

나. 베트남 박간성

- 주소:
- 주관부서:
- 연락처: , 팩스/이메일:

※ 외국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시 반드시 인력송출 특정 지자체를 명시

2. 선발 대상 및 기준

가. 선발 대상: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박간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나이: 만 25세 이상 ~ 만 40세 이하의 남, 여

다. 직업: 농업 종사자 (근로자별 농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라.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자(보증비용 없음)

마. 제외대상: 색맹,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

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자는 본국 출국 후부터 귀국할 때 까지의 해당 기간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베트남에서 기본교육(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비용, 범죄경력증명 비용,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비용 등 기본 송출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송출 인원 및 시기

가. 송출인원: 연간 약 000명(송출 근로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송출시기: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A시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

4.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비자)로 한다.

나. 임금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근로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된다.

- 근로자와 농장주가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경우에 농장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다. 근무시간, 휴게, 휴일

- 근무시간은 일 7~8시간으로 하되, 1일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최저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한다.

- 매월 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는 최저시급의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는 최저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고용주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한다.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이 갖추어야 한다.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해당 비용을 정산 후 출국한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마. 교통비

- 항공료는 근로자(또는 B시)가 자부담으로 왕복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정상 근로 후 출국하는 경우 A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산 확보 시 항공료 정액(일정 금액)을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 입·출국 시 국내 공항과 A시 이동은 A시에서 지원한다.

바. 보험

- 고용주는 근로자가 입국 후 근로개시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근로자는 대한민국 입국 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사망자의 신체, 유해, 개인재산 등 베트남으로 귀국절차 및 비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 A시, B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 사유 발생 시 A시는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용주가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차.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별도 신고 없이 5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고용주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A시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 해지 시 근무지를 변경한다.(단, 대한민국 출입국관서의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한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된 경우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계약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귀국 비용을 부담하고, A시와 B시의 법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을 고려한다.

카.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타. 근로계약서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5. 입국 및 출국

가.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A시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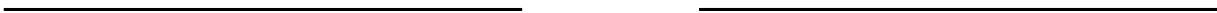
다.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될 수 있다.

* 귀책 사유 : 무단결근, 무단 이탈,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박관성을 대표하여
박관성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타이빈성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타이빈성 (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아래에서는 "A시"이라 칭함)
2. 베트남 타이빈성 (아래에서는 "B시"라 칭함)

제3조. 합의

1. 양측은 본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2.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본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베트남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A국가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프로그램은 5개월 동안 A시의 농업 지역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제5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가.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 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 라.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 마.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 한다.
- 바.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 행정비용 등 기본비용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

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사.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 ②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 ③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경상북도 성주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 나.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 라.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마. A시는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바.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 사. 부속합의서의 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베트남 타이빈성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A시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다.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라. A시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필리핀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여행자보험,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 마. A시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 바.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B시와의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 ① B시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20% 이상 이탈 시 B시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②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5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③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7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A시와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자. 계절근로자의 과실로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교육한다.

차.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카. A시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제6조. 이행조항

1. 본 업무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업무협약은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및 2025년 월 일 베트남 타이빈성에서 체결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타이빈성을 대표하여
타이빈성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붙임] 부속합의서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

1. 업무협약(MOU) 주체

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 주소:
- 주관부서:
- 연락처: , 팩스/이메일:

나. 베트남 타이빈성

- 주소:
- 주관부서:
- 연락처: , 팩스/이메일:

※ 외국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시 반드시 인력송출 특정 지자체를 명시

2. 선발 대상 및 기준

가. 선발 대상: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타이빈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나이: 만 25세 이상 ~ 만 40세 이하의 남, 여

다. 직업: 농업 종사자 (근로자별 농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라.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자(보증비용 없음)

마. 제외대상: 색맹,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

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자는 본국 출국 후부터 귀국할 때 까지의 해당 기간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베트남에서 기본교육(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비용, 범죄경력증명 비용,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비용 등 기본 송출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송출 인원 및 시기

가. 송출인원: 연간 약 000명(송출 근로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송출시기: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A시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

4.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비자)로 한다.

나. 임금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근로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된다.

- 근로자와 농장주가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경우에 농장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다. 근무시간, 휴게, 휴일

- 근무시간은 일 7~8시간으로 하되, 1일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최저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한다.

- 매월 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는 최저시급의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는 최저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고용주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한다.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이 갖추어야 한다.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해당 비용을 정산 후 출국한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마. 교통비

- 항공료는 근로자(또는 B시)가 자부담으로 왕복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정상 근로 후 출국하는 경우 A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산 확보 시 항공료 정액(일정 금액)을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 입·출국 시 국내 공항과 A시 이동은 A시에서 지원한다.

바. 보험

- 고용주는 근로자가 입국 후 근로개시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근로자는 대한민국 입국 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사망자의 신체, 유해, 개인재산 등 베트남으로 귀국절차 및 비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 A시, B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 사유 발생 시 A시는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용주가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차.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별도 신고 없이 5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고용주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A시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 해지 시 근무지를 변경한다.(단, 대한민국 출입국관서의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한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된 경우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계약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귀국 비용을 부담하고, A시와 B시의 법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을 고려한다.

카.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타. 근로계약서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5. 입국 및 출국

가.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A시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다.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될 수 있다.

* 귀책 사유 : 무단결근, 무단 이탈,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타이빈성을 대표하여
타이빈성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2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개정 이유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급과 참외의 유통 근절 및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 규정 개정(안 제4조)
 - (현행)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액비 생산, 살포
 - (개정)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퇴·액비의 생산, 무상(또는 유상) 공급
- 액비의 사용 규정 개정(안 제19조)
 - (현행) 제19조(액비의 사용)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위해 생산된 액비를 수도작 등 작물재배 농가에 사용한다.
 - (개정) 제19조(액비의 사용 및 공급) ①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재배 농가에 사용한다.
 ②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상(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18조)
 - (신설) 자원화센터의 운영 인력 및 근무 실태 관리

- 자원화센터 이용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신설) 수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양도한 사람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상품 농산물(참외) 수매대금 및 운영비 등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농정과-26518(2024.11.28.)호
 - 2)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13427(2024.11.15.)호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가족지원과-25569(2024.11.18.)호
 - 4) 비용추계서 : 여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650-1번지”를 “654번지”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퇴·액비 생산, 무상(또는 유상) 공급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촉직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원화센터의 운영 인력 및 근무 실태 관리

제19조의 제목 “(액비의 사용)”을 “(액비의 사용 및 공급)”으로 하고, 비상품농산물의 자원순환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체계 및 친환경 농업 실현”으로, “액비를 수도작”을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상(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제2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양도한 사람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치)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u>650-1번지</u> 일원에 둔다.</p>	<p>제3조(위치) ----- ----- ----- ---- <u>654번지</u> -----.</p>
<p>제4조(기능) 자원화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액비 생산, 살포</u></p>	<p>제4조(기능)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퇴 · 액비 생산, 무상(또는 유상) 공급</u></p>
<p>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u>구성한다</u>.</p> <p>② ~ ⑥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 <u>10인</u> <u>이내로 구성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u>규정에 의거 위촉직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군수는 자원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신 설>

4. (생 략)

제19조(액비의 사용) 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위해 생산된 액비를 수도작 등 작물재배 농가에 사용한다.

<신 설>

제22조(자원화센터 이용의 제한) ① (생 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4. 자원화센터의 운영 인력 및 근무 실태 관리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9조(액비의 사용 및 공급) ----- 체계 및 친환경 농업 실현-----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

②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상(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제22조(자원화센터 이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수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양도한 사람 등

□ 관계법령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참외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참외 생산 및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참외재배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참외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4호 에서 규정한단체 및 5인 이상이 모여 참외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칭한다.
3. “발효과“라 함은 정상발효과 이상발효과, 물찬과를 통칭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참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외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참외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 참외산업발전위원회는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기타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고품질의 참외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급과 참외의 유통 근절 및 자원의 선순환 체계 선도적 구축의 이바지함에 목적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산액 : 3,100백만원(도비 300 군비 2,300 자조금 500)

가. 구매비 : 2,300백만원(도비 300 군비 1,500 자조금 500)

- 산출근거 : 200원/kg x 11,500톤 = 2,300백만원

나. 운영비 : 800백만원(군비 800)

- 운영비 : 400백만원

- 사무관리비 : 50백만원

- 공공운영비 : 35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도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a)	300	300	300	300	300	1,500
세출	○ 도비	300	300	300	300	300	1,500
	○ 군비	2,300	2,300	2,300	2,500	2,500	11,900
	소계(b)	2,600	2,600	2,600	2,800	2,800	13,400
□ 총 비용(a-b)		-2,300	-2,300	-2,300	-2,500	-2,500	-11,9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도비	300	300	300	300	300	
군비	2,300	2,300	2,300	2,500	2,500	
기타	500	500	500	700	700	
합계	3,100	3,100	3,100	3,500	3,500	

5. 작성자 : 농정과 농산물유통팀장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3,100		
수매비	수매비	2,300	- 200원/kg x 11,500톤 = 2,300백만원	
	소 계	2,300		
운영비	운영비	400	- 3,125천원 x 4명 x 12개월 = 150백만원 - 20,834천원 x 12월 = 250백만원	
	사무관리비	50	- 홍보비 5,000천원 * 4회 = 20백만원 - 부지임차료 5,000천원 * 6회 = 30백만원	
	공공운영비	350	- 차량장비 유지비 5,000천원 * 2회 = 10백만원 - 시설기계 유지비 50백만원 - 전기료 11,000천원 * 12월 = 132백만원 - 상하수도 3,000천원 * 12월 = 36백만원 - 기타보험료 6,000천원 * 12월 = 72백만원 - 퇴비화재료 5,000천원 * 6회 = 30백만원 - 퇴비운반 10,000천원 * 2회 = 20백만원	
	소 계	800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2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을 위한 군정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조수입 증가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정의규정 개정(안 제2조)
- 준수사항 및 제재 개정(안 제6조)
 - (현행)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 참외 자조금 납부
 - (개정)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 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 거출 기준 금액 이상 납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나. 예산조치 : 저급과 참외 구매대금 및 운영비 등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농정과-26518(2024.11.28.)호
 - 2)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13427(2024.11.15.)호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가족지원과-25569(2024.11.18.)호
 - 4) 비용추계서 : 여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단체 및 5인 이상이 모여 참외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칭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 거출 기준 금액 이상 납부

제1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4호 에서 <u>규정한</u></p> <p>3. (생 략)</p> <p>제6조 (준수사항 및 제재) ①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참외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u>사용, 참외 자조금 납부</u></p> <p><신 설></p> <p>7. (생 략)</p>	<p>제2조 (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u>규정한 단체 및 5인 이상이 모여 참외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칭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 (준수사항 및 제재)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사용</u></p> <p>7. <u>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 거출 기준 금액 이상 납부</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 ⑦ (생략) <u><신설></u></p>	<p>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 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u></p>
--	---

□ 관계법령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 성주참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비상품 농산물을 수매·처리·자원화하여 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엄선된 참외만을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품 농산물” 이라 함은 참외농가에서 생산되는 저급과 참외로서 발효과, 미숙과, 부패과, 파손과 등을 말한다.
2. “운영자” 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매카드” 라 함은 비상품 농산물 자조금을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농가가 발급받는 카드로서 저급과 참외를 수매하기 위한 편의카드를 말한다.
4. “수매” 라 함은 비상품 농산물을 거두는 일을 말한다.
5. “계근대” 라 함은 참외농가가 저급과 참외를 수매하는 중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또는 장치)을 말한다.
6. “공차중량” 이라 함은 저급과 참외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 시키고 저급과 참외를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한 값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 라 한다)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대항리 650-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자원화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비상품 농산물의 반입·수매·처리
2.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액비 생산, 살포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농정과 농산물유통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2 11(화) 10:30
성주군의의회 본회의장

제288회 성주군의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자수입증지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을 폐지하여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나.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수수료 등 납부에 관한 사항(제3조)
-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제4조)
- 계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제5조)
- 계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6조)
-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제7조)
- 수입금 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족지원과-49789(2024.10.24.)]
- 2) 규 제 심 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기획예산실-12358(2024.10.24.)]
- 3) 입 법 예 고 : 2024. 10. 30. ~ 11. 19(20일간)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하여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변화한 현실에 맞춰 관련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간 사용하였던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전자 이미지화 한 형태의 수입증지가 도입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1. 제안이유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업분야교류 협정 체결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 베트남 꽝남성, 베트남 박깐성, 베트남 타이빈성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세부조건
-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국가(지자체)간 협력 방안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3. 추진실적

연도	도입 지자체	도입인원	이탈자	이탈률	비고
2023	필리핀 아팔릿시	261명	3명	1.1%	
	필리핀 마갈랑시	270명	37명	13.6%	
2024 상반기	필리핀 아팔릿시	371명	6명	1.6%	
	필리핀 마갈랑시	235명	72명	30.6%	
	필리핀 로렐시	97명	16명	16.4%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32명	2명	6.3%	
	라오스 산야부리주	102명	-	-	
2024 하반기	필리핀 아팔릿시	19명	-	-	
	필리핀 로렐시	24명	2명	8.3%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1명	-	-	
	라오스 산야부리주	51명	-	-	

4. 기타사항

향후 베트남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협의 결과 및 경미한 변경 사항(최저임금, 유치 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후 시행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및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나. 참고자료

- 1) 비용추계서
- 2) '25년 체결 협정서(안)
- 3)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6. 검토의견

- 농업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농업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계절에 집중되는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 2024년에는 필리핀의 아팔릿시, 마갈랑시, 로렐시, 클라베리아시와 라오스의 산야부리주에서 총 93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인력지원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도입된 지자체 중 라오스 산야부리주를 제외하면 최소 2명에서 최대 72명이 이탈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협정 체결 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및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도입인원, 숙식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 기존 도입 지자체를 포함하여 2025년도에 추가 도입될 지자체인 베트남 꽝남성, 박간성, 타이빈성과도 협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결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급과 참외의 유통 근절 및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 규정 개정(안 제4조)

- 비상품 농산물의 고액 분리 및 퇴·액비의 생산, 무상(또는 유상) 공급

나. 액비의 사용 규정 개정(안 제19조)

- 제19조(액비의 사용 및 공급) ①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재배 농가에 사용한다.
- ②생산된 액비는 수도작, 참외, 과수 등 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상(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18조)

- 자원화센터의 운영 인력 및 근무 실태 관리

라. 자원화센터 이용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수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양도한 사람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상품 농산물(참외) 구매대금 및 운영비 등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농정과-26518(2024.11.28.)호
 - 2)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13427(2024.11.15.)호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가족지원과-25569(2024.11.18.)호
 - 4) 비용추계서 : 여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비상품 농산물의 자원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 및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생산된 액비를 농가에 사용·공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을 위한 군정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조수입 증가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개정(안 제2조)

나. 준수사항 및 제재 개정(안 제6조)

-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 군수가 정한 참외 자조금 거출 기준 금액 이상 납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저급과 참외 구매대금 및 운영비 등

다. 기타

1) 입법예고 : 농정과-26518(2024.11.28.)호

2)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13427(2024.11.15.)호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가족지원과-25569(2024.11.18.)호

4) 비용추계서 : 여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의 참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비상품 농산물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자조금 거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참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마을단체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

1) 시설명 : 수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가) 위탁 관리대상

시설명	면적(㎡)		주소	주요시설	비고
	대지	건축/연면적			
대가천어울림마당	85,820	-	수륜면 수성리 954-1	주차장 축구장, 야영장, 야외무대, 공원 등	
농산물가공시설	949	181.57 181.57	수륜면 수성리 954-84	떡가공시설	
솔산 마을회관	522	93.22/ 72.20	수륜면 송계리 1168-1	주방, 화장실, 욕실, 방 외	
신정리 마을회관	1,872	117.54/ 191.70	수륜면 신정리 316외3필지	주방, 화장실, 욕실, 방, 회의실	
활력증진센터	3,071	150/ 295.80	수륜면 수성리 954-70외1필 지	회의실, 화장실, 주방, 방, 사무실 외	
경승지네트워크센터		154.76/ 232.08		재난방송시설, 교육공간 외	

나) 위탁기간 : 3년(2025. 4. 1. ~ 2028. 3. 31.)

다) 위탁방법 : 수의계약(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 현 수탁자(2020. 4. 1. ~ 2025. 3. 31.(5년) : 솔가람수익영농조합법인(대표: 이훈식)

라) 위 탁 료 : 2,680,000원

마) 위탁사무

- 마을회관(송계리, 신정리), 활력증진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등 일체의 시설
물 운영·관리 일체

-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민원사항 해소 등

바) 예산지원 : 해당없음('25년도 기준)

2) 시 설 명 : 남작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가) 위탁 관리대상

시설명	면적(㎡)		주소	주요시설	비고
	대지	건 축/ 연면적			
문화복지센터	810	517.89/ 517.89	수륵면 보월리 507,508	주방, 사무실, 부대시설 외	
다목적광장	9,475	10,285/ 10,285	수륵면 보월리 506,933-1,1 259-50	수영장, 풋살장, 공연대, 야영장 외	
주민쉼터방	840	73.10/ 73.10	수륵면 작은리 1071-1	주방, 방 화장실 외	
농산물판매장	103.04	103.04/ 103.04	수륵면 보월리 933-1	농산물 판매장 및 체험장	

나) 위탁기간 : 3년(2025. 4. 1. ~ 2028. 3. 31.)

다)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 현 수탁자(2020. 4. 1. ~ 2025. 3. 31.(5년) : 남작골영농조합법인(대표: 최이곤)

라) 위 탁 료 : 1,860,000원

마) 위탁사무

- 문화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주민쉼터방 일체의 시설물 시설물 운영·관리 일체
 -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민원사항 해소 등
- 바) 예산지원 : 해당없음(‘25년도 기준)

3. 향후계획

- 가. 위·수탁 협약체결 2025. 3.
- 나. 위탁관리 운영 2025. 4.

4. 참고자료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마.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8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 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주민이 필요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마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2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마을단체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

1) 시설명 : 수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가) 위탁 관리대상

시설명	면적(㎡)		주소	주요시설	비고
	대지	건축/연면적			
대가천어울림마당	85,820	-	수륜면 수성리 954-1	주차장 축구장, 야영장, 야외무대, 공원 등	
농산물가공시설	949	181.57 181.57	수륜면 수성리 954-84	떡가공시설	
슬산 마을회관	522	93.22/ 72.20	수륜면 송계리 1168-1	주방, 화장실, 욕실, 방 외	
신정리 마을회관	1,872	117.54/ 191.70	수륜면 신정리 316외3필지	주방, 화장실, 욕실, 방, 회의실	
활력증진센터	3,071	150/ 295.80	수륜면 수성리 954-70외1필지	회의실, 화장실, 주방, 방, 사무실 외	
경승지네트워크센터		154.76/ 232.08		재난방송시설, 교육공간 외	

나) 위탁기간 : 3년(2025. 4. 1. ~ 2028. 3. 31.)

다) 위탁방법 : 수의계약(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 현 수탁자(2020. 4. 1. ~ 2025. 3. 31.(5년) : 솔가람수익영농조합법인(대표: 이훈식)

라) 위 탁 료 : 2,680,000원

마) 위탁사무

- 마을회관(송계리, 신정리), 활력증진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등 일체의 시설
물 운영·관리 일체

-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민원사항 해소 등

바) 예산지원 : 해당없음('25년도 기준)

2) 시 설 명 : 남작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가) 위탁 관리대상

시설명	면적(㎡)		주소	주요시설	비고
	대지	건 축/ 연면적			
문화복지센터	810	517.89/ 517.89	수륜면 보월리 507,508	주방, 사무실, 부대시설 외	
다목적광장	9,475	10,285/ 10,285	수륜면 보월리 506,933-1,1 259-50	수영장, 풋살장, 공연대, 야영장 외	
주민쉼터방	840	73.10/ 73.10	수륜면 작은리 1071-1	주방, 방 화장실 외	
농산물판매장	103.04	103.04/ 103.04	수륜면 보월리 933-1	농산물 판매장 및 체험장	

나) 위탁기간 : 3년(2025. 4. 1. ~ 2028. 3. 31.)

다)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 현 수탁자(2020. 4. 1. ~ 2025. 3. 31.(5년) : 남작골영농조합법인(대표: 최이곤)

라) 위 탁 료 : 1,860,000원

마) 위탁사무

- 문화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주민쉼터방 일체의 시설물 시설물 운영·관리 일체
-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민원사항 해소 등

바) 예산지원 : 해당없음('25년도 기준)

3. 향후계획

- | | |
|--------------|----------|
| 가. 위·수탁 협약체결 | 2025. 3. |
| 나. 위탁관리 운영 | 2025. 4. |

4. 참고자료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마.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8조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

- 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 제8조(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 제10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